##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


[부산지방법원 2007. 9. 14. 2007고합199, 2007고합264(병합), 2007고합268(병합)]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외 3인

【검 사】 김수현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이홍외 5인

## 【주문】

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, 피고인 2, 피고인 4를 각 징역 4년에,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9일을 피고인 1에 대한, 221일을 피고인 2에 대한, 162일을 피고인 3에 대한, 142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피고인 2로부터 52,500,000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의 점은 무죄.

## 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